

檢 討 報 告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日 時 : 2009. 11 . 26 (목) 10:00

行政建設委員會

專門委員 명 금 길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삶의 터전인 마을을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윤택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사업추진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극대화하고 자치역량을 강화 하므로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1)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사업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주민조직”으로 정의, 같은조 제4항에서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일상생활 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사업의 종류를 주민의 건강·발달 복지증진 사업을 비롯하여 13개 사업으로 명시

(2) 안 제3조에서는 주민과 사업주체의 책무로서 주민은 주체적으로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사업주체는 사업의 모든 과정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따라 성실히 추진

(3) 안 제4조, 제5조,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사항,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사항에서 사업비의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사항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교육연수, 전문가의 파견, 사례의 현장견학, 활동공간의 확보 등 세부적 지원내용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의 지속성 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4)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을 공모하고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이나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육성과 사업주체는 사업종료 후 구청장에게 사업결과보고서 제출하도록 규정

(5) 안 제8조에서는 사업분석 및 평가로서 사업에 대한 발표회를 통한 평가. 진단결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상하고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업진단 및 평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6)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해촉,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구성면에서는 당연직,위촉직 구분없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

[검토의견]

○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북돋아주는 ‘공간의 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좋은 지역을 재창조 하기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고 주관부처별로 분담하여 건설교통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농림부의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문화관광부의 가고싶은 섬, 해양부의 살기좋은 어촌만들기 등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적 지원사업 등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심포지엄, 정보공유,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2004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등 비슷한 제명의 조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3의 제2항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에 근거하여 제정·시행되고 있고, 이에 우리구에서도 이미 해피아이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기초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가고자 하는 주민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반 속에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3의제2항이 2009년 5월2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은 물론 같은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근간으로 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참여’로서 성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청 중심의 하향식 사업방식, 형식적 주민참여, 급조된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을 단순히 취합하거나 혼합하는 방식을 통한 업적위주 의 실적 등이 아닌 사업추진부서, 관련 직능단체, 각계각층의 마을만들기 참여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내용, 추진 방법,

지원 체계 등을 논의하고 협력하므로서 지역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됨